#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5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 강경숙·차규근·황운하

김준형 • 정춘생 • 김재원

신장식 · 서왕진 · 강유정

백선희 • 김선민 • 진선미

고민정 • 문정복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 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, 연속적이고 체계적 인 계획 하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 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2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3조제3항에"를 "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"로 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감의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·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	제12조(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		
고서) ① (생 략)	고서) ①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		
	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		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		
	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		
	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		
	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		
	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		
	<u>함하여야 한다.</u>		
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	<u>③</u>		
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	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		
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	<u>획과 제13조제3항에</u>		
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.			